

2024년 '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' 참여기업 모집 공고

혁신적인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 「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」에 참여할 (예비)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4년 3월 20일
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

1

사업개요

- **사업목적** :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(예비)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
- **지원내용** : 초기 창업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

사업비 지원	특화프로그램 (경기도사회적경제원)	육성프로그램 (운영기관)
시제품(서비스)제작, 시장검증 및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(최대 5천만원~최소 1천만원)	투자유치·판로개척 프로그램 (사회가치투자대회, 임팩트정책오디션) 선·후배기업-VC·AC 등 임팩트멤버십 구축 (Tuesday Brunch, 마스터즈포럼 등)	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밀착·전문멘토링 (월 1회 이상) 역량강화프로그램 지원 (교육·워크샵 등, 총 20시간)

* 상세 지원내용은 동 공고 '3. 세부 지원내용' 참고

추진체계 및 역할

- (경기도사회적경제원) (예비)창업기업 모집·선정, 사업비 지급, 판로 개척·투자유치·전문가 연계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
- (운영기관) 밀착멘토링, 창업공간 제공,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
* 대면심사 대상 창업기업별 운영기관(1개소) 선택 필요

- **협약기간** :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(2024. 5월 ~ 12월)

2

신청자격 및 선정규모

□ 신청자격 : 아래 지원대상 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여야 함

□ 선정규모 : 초기트랙 45개소, 재도전트랙 5개소

구분		지원대상 요건 설명	
초기트랙	예비창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(개인, 법인)이 없는 자 * 단, 선정 이후, 개인사업자를 경기도 내 법인기업으로 전환 필수 	
	사회적경제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①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①(예비)사회적기업, ②(예비)마을기업, ③자활기업, ④(사회적)협동조합, ⑤소셜벤처이며, ■ ②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 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자 ※ 조건 ①, ② 모두 충족 필요 	
	사회적경제기업 진입희망 조직 (非사회적경제 조직)	이종창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①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6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이종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■ ②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이종창업하고자 하는 자 ※ 개인·법인 모두 업력제한 없음(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업력이 없는 사회적경제기업 진입희망 조직 지원 가능) <p>☞ 신규 이종창업을 진행해야 하며, 협약 종료 전까지 사회적경제기업(①~⑥ 형태)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야 함 (불가 시,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)</p> <p>* 이종창업 여부 : 동 공고문 8. 유의사항 참고</p>
		동종유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①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6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동종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■ ②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동종유지하고자 하는 자로 ■ ③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 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자 ※ 조건 ①또는②와 ③ 충족 필요 <p>☞ 협약 종료 전까지 사회적경제기업(①~⑥ 형태)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야 함(불가 시,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)</p>
재도전트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①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①(예비)사회적기업, ②(예비)마을기업, ③자활기업, ④(사회적)협동조합 ■ ②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 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4년 이상인자 ■ ③ 결산재무제표('23년 기준) 연매출 9억 1천만원 이하, 상용근로자(임시/일용 제외) 11명 이하* * 기준: 2023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및 DB 구축(경기도사회적경제원) 사회적경제조직 평균 매출, 고용인원 준용 <p>※ 조건 ①, ②, ③ 모두 충족 필요</p>		

※ (참고)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사업자별 업력산출 기준

-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산출

-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산출

* 단, 경기도 기업이 아닐 경우, 중간평가('24.7월) 전까지 이내 경기도 본점 이전 필수

□ 신청 제외 대상

< 신청 제외 대상 내용 >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- ▶ 예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
 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 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를 체결한 자
 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- ▶ 예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
 1. 「국세징수법」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 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

- ▶ 지원제외 대상 업종(대상 업종의 코드번호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)
 1. 일반유흥주점업(코드번호세세분류 : 56211)
 2. 무도유흥주점업(코드번호세세분류 : 56212)
 3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코드번호세세분류 : 91249)
 4. 그 밖에 1~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④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 중 아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및 사업을 완료했던 이력이 있는 자(기업)

- ▶ 중복참여 불가 사업
 1. (2023년) 임팩트 테마별 액셀러레이팅 사업
 2. (2023년) R&D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(사업개발비 지원기업)

⑤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」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 중 '동 사업 접수마감일'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(유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협약체결·수행 불가)

- ▶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: 「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'사업화'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(시제품 제작비 등)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(별첨 참고)
- ※ 지자체 지원사업은 동일아이템·동일비목 사용이 아닐 경우

⑥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
⑦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우리은행 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(기업)

⑧ 2024년 동 사업 운영기관의 인력 또는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

⑨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⑩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
⑪ 기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(예: 사회적물의 발생 등)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* 신청 제외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표 제출 필수

□ 지원내용 : 사업비 및 밀착멘토링, 특화프로그램, 역량강화프로그램 등

구분	세부 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창업기업 사업비	<p>■ 시제품(서비스) 제작, 사업모델 수립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(공급가 기준) (최대 5천만원~최소 1천만원, 평균 2천만원 내외)</p> <p>< 사업화자금 차등배정(안, 단위 : 원) 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최초 배정</th> <th>2차 배정</th> <th>총합</th> <th>배정기업 수</th> <th>소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S등급</td> <td>30,000,000</td> <td>20,000,000</td> <td>50,000,000</td> <td>1</td> <td>50,000,000</td> </tr> <tr> <td>A등급</td> <td>25,000,000</td> <td>15,000,000</td> <td>40,000,000</td> <td>4</td> <td>160,000,000</td> </tr> <tr> <td>B등급</td> <td>19,000,000</td> <td>11,000,000</td> <td>30,000,000</td> <td>8</td> <td>240,000,000</td> </tr> <tr> <td>C등급</td> <td>13,000,000</td> <td>7,000,000</td> <td>20,000,000</td> <td>17</td> <td>340,000,000</td> </tr> <tr> <td>D등급</td> <td>6,000,000</td> <td>4,000,000</td> <td>10,000,000</td> <td>20</td> <td>200,000,000</td> </tr> <tr> <td>합계</td> <td>93,000,000</td> <td>57,000,000</td> <td>150,000,000</td> <td>50</td> <td>990,00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배정방식 : ① 사업계획서 내 신청금액 범위(최대 3천만원~최소 6백만원) 내에서 대면심사 결과에 따라 1차 사업비 차등 배정 → ② 중간평가(24.7월)를 통해 2차 사업비 차등 배정</p> <p>< 비목·세목 정의 및 기준 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비목</th> <th>세목</th> <th>정의</th> <th>집행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6">사업 모델 개발비</td> <td>사업 추진비</td> <td>■ 법인설립 및 정관변경 등 사업화를 위한 지급수수료,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재료비</td> <td>■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구입비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기자재 구입비</td> <td>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경비</td> <td>총 사업비의 40% 이내</td> </tr> <tr> <td>기자재 임차료</td> <td>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의 임차, 설치, 운영에 필요한 경비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외주 용역비</td> <td>■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화 추진에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홍보 및 마케팅비</td> <td>■ 창업기업의 제품·서비스·사업 홍보 및 광고, 홍보채널 운영 및 유지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(소모성 비용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운영비</td> <td>일반 운영비</td> <td>■ 일반수용비, 공공요금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여비</td> <td>■ 국내 출장 경비(실비정산 원칙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활동비</td> <td>■ 창업 활동에 필요한 문헌 구입, 사무용품, 인쇄 및 복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</td> <td>월 30만원 한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지급방식 : 회계처리기준에 기준하여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지급주기에 맞춰 집행예정(①창업기업 금액사전신청 → ②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→ 교부, 건별 지급)</p> <p>* 선정자 대상 회계처리기준 별도 교육·안내 예정</p>	구분	최초 배정	2차 배정	총합	배정기업 수	소계	S등급	30,000,000	20,000,000	50,000,000	1	50,000,000	A등급	25,000,000	15,000,000	40,000,000	4	160,000,000	B등급	19,000,000	11,000,000	30,000,000	8	240,000,000	C등급	13,000,000	7,000,000	20,000,000	17	340,000,000	D등급	6,000,000	4,000,000	10,000,000	20	200,000,000	합계	93,000,000	57,000,000	150,000,000	50	990,000,000	비목	세목	정의	집행기준	사업 모델 개발비	사업 추진비	■ 법인설립 및 정관변경 등 사업화를 위한 지급수수료,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		재료비	■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구입비		기자재 구입비	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경비	총 사업비의 40% 이내	기자재 임차료	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의 임차, 설치, 운영에 필요한 경비		외주 용역비	■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화 추진에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		홍보 및 마케팅비	■ 창업기업의 제품·서비스·사업 홍보 및 광고, 홍보채널 운영 및 유지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(소모성 비용)		운영비	일반 운영비	■ 일반수용비, 공공요금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		여비	■ 국내 출장 경비(실비정산 원칙)		활동비	■ 창업 활동에 필요한 문헌 구입, 사무용품, 인쇄 및 복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	월 30만원 한도
	구분	최초 배정	2차 배정	총합	배정기업 수	소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S등급	30,000,000	20,000,000	50,000,000	1	50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A등급	25,000,000	15,000,000	40,000,000	4	160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B등급	19,000,000	11,000,000	30,000,000	8	240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C등급	13,000,000	7,000,000	20,000,000	17	340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D등급	6,000,000	4,000,000	10,000,000	20	200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합계	93,000,000	57,000,000	150,000,000	50	990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비목	세목	정의	집행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사업 모델 개발비	사업 추진비	■ 법인설립 및 정관변경 등 사업화를 위한 지급수수료,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재료비		■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구입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자재 구입비		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경비	총 사업비의 40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자재 임차료		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의 임차, 설치, 운영에 필요한 경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외주 용역비		■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화 추진에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홍보 및 마케팅비		■ 창업기업의 제품·서비스·사업 홍보 및 광고, 홍보채널 운영 및 유지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(소모성 비용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영비	일반 운영비	■ 일반수용비, 공공요금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여비	■ 국내 출장 경비(실비정산 원칙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활동비	■ 창업 활동에 필요한 문헌 구입, 사무용품, 인쇄 및 복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	월 30만원 한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특화 프로그램	<p>■ 판로개척, 투자유치 연계, 협업기회 제공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제공</p> <p>* (세부프로그램) 임팩트정책오디션, 사회가치투자대회, 마스터즈포럼 등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역량강화 프로그램	<p>■ 운영기관별 특장점이 반영된 교육 등 역량강화프로그램 제공(20시간 참여 필수)</p> <p>* (세부프로그램) 디자인씽킹 워크샵, 비즈니스모델 분석 및 혁신 워크샵 등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자원연계	<p>■ 선·후배기업-창업기획자(AC)-투자기관(VC)의 정기적인 미팅기회 제공</p> <p>* (프로그램명) 문제해결 핫라인, Tuesday Brunch 등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밀착 멘토링	<p>■ 기업별 담임멘토를 배정하여 사업모델 구축 지원을 위한 밀착멘토링 제공</p> <p>* (제공횟수) 협약기간 내 월 2회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 멘토링	<p>■ 분야별(인사·노무·특허 등) 전문멘토 연계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 지원</p> <p>* (제공횟수) 협약기간 내 3회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간제공	<p>■ 권역별(경기 북부·남부) 창업전용 공간 제공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4

신청 및 접수

□ 신청·접수 기간 : 2024. 3. 20.(수) ~ 4. 11.(목) 16시까지

□ 신청방법 :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홈페이지(www.gsic.or.kr) 온라인 신청·접수

* 온라인 신청 방법 '별첨. 자주 묻는 질문' 참고

□ 제출서류

연번	서류명	초기트랙		재도전 트랙	제출방법	비고
		예비 창업자	사업자 보유			
1	참여요건 자가진단표	제출필요			각각 분리하여, 저장 후 압축하여, & 1. 사업신청서 탭에 업로드	
2	사업신청서 및 계획서	제출필요				
3	가점 증빙서류	해당시 제출				5. 심사 및 선정 참고
4	경기도사회적경제원 GSIC클래스 수강내역	제출필요				
5	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	해당시 제출			각각 분리하여, 저장 후 압축하여, & 2. 동의서 탭에 업로드	
6	창업기업 사업 신청 확약서	제출필요				
7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제출필요				
8	대표자 총사업자등록내역	제출필요				또는 사업자등록 사실여부
9	사업자등록증	X	제출필요		각각 분리하여, 저장 후 압축하여, & 3. 기타증빙 탭에 업로드	
10	법인등기부등본	X	법인만 해당	제출필요		
11	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류	X	해당시 제출	제출필요		
12	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 증빙	해당시 제출				
13	기타 증빙서류	해당시 제출				
14	결산재무제표	X	제출필요			2021년~ 2023년
15	4대사회보험가입자 명부	X	제출필요			

* 제출기한 이후에 사업계획서 수정·보완·교체 및 추가 제출 절대 불가

** 발표자료는 심층인터뷰 대상자 별도 제출 안내 예정

5

심사 및 선정

□ **심사 절차** : 총 3단계 심사(서면→심층인터뷰→대면)를 통해 최종 선정

①요건검토	②서면심사	③심층인터뷰	④대면심사	⑤최종선정
자격기준 검토 및 서면심사 대상자 확인	사업계획서 심사 1.5배수 선정	대표자의 창업의지, 사업화실현 가능성 등 파악 대면심사 점수 20% 반영	사업계획서 기반 PT발표 및 질의응답 1배수 선정	사업비 및 운영기관 배정 등 확정 및 최종 공고

※ 요건검토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및 운영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, 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 사업참여제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협약 해지

□ **심사방법**

① (요건검토) 제출된 사업계획서, 경기도사회적경제원 GSIC클래스* 필수 사전교육 수강여부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

* 경기도사회적경제원 GSIC클래스 수강방법 '별첨. 자주 묻는 질문' 참고

② (서면심사) 사업계획서를 평가(가점 포함) 하여 선정 규모의 1.5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을 선발, 심층인터뷰 대상자로 선정

< 서면심사 가점 대상 >

구분	대상자	점수	비고(제출서류 등)
가점 (최대 8점)	■ 2021년~2023년 도내 시·군 사회적경제지원 사업 참여자 로 시·군의 추천서를 득한 자	5점	시군에서 제출한 명단 기준 (별도 제출 필요 없음)
	■ 신청기업(팀) 대표자가 2021년~2023년 도내 시·군 사회적경제교육과정(최소12시간) 수료자 * 단, 부족한 시간은 사경원LMS교육으로 추가교육시간 인정 (요건검토 시 제출하는 필수과목은 인정 안됨)	3점	
	■ 2023년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비기너캠프 참가자	3점	수료증
	■ 2023년 청년 임팩트메이커 창업캠프 수료팀	3점	수료증

* 가점 증빙서류 미제출 시, 가점 불인정(가점은 서면심사에만 적용)

③ (심층인터뷰)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및 운영기관 담당자 사전 심층 인터뷰를 통해 대표자의 창업의지, 사업화실현 가능성 등을 확인 및 대면심사 점수에 반영(20%)

④ (대면심사) 소셜미션, 창업아이템 경쟁력,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(발표 5분, 질의응답 7분)

* 대면심사 시, 대표자(동 사업 신청자)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

⑤ (최종선정) 대면심사 고득점사 순으로 운영기관·사업비 배정 완료 후 최종 선정 공고

* 운영기관 : 심층인터뷰 대상자에게 1순위·2순위 희망 운영기관 취합할 예정이며, 대면심사 고득점 순으로 운영기관 배정

** 사업비 : 대면심사 결과 및 사업계획서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

□ 심사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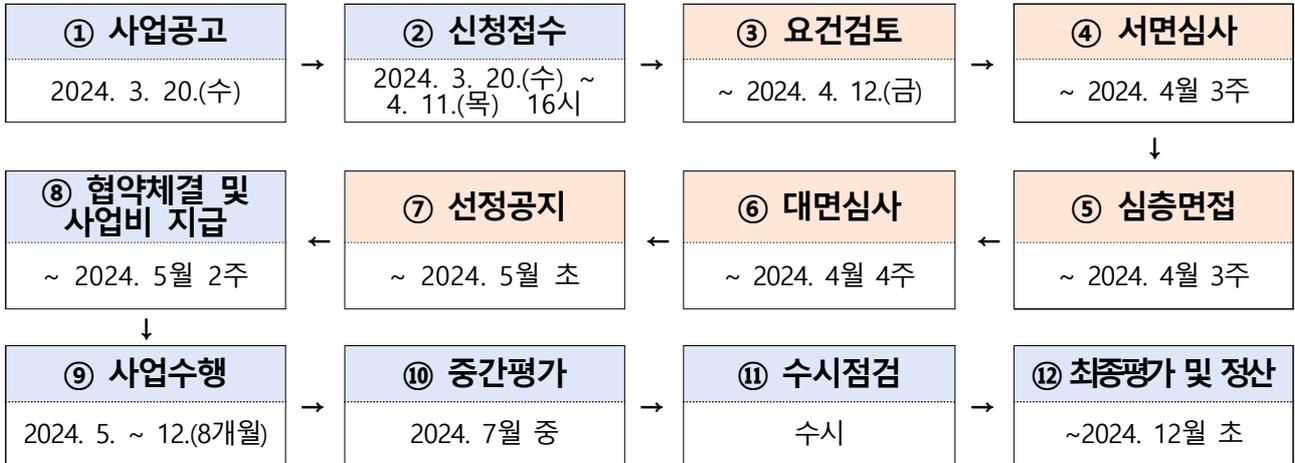
○ 요건검토 내용

구분	내용	검토결과
요건 검토	■ 공고문 내 기재된 신청자격 부합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/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	■ 사업계획서 제출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/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	■ 신청 제외 대상 여부 자가진단표 제출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/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	■ 필수교육 수강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/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GSIC 클래스 사전 수강 필수교육 ></p> <p>강의명 :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, 소셜임팩트 창업 교육</p> <p>[과목 1] 창업가를 위한 임팩트 비즈니스 개론(15분)</p> <p>[과목 2] 사회적기업가정신(15분)</p> <p>[과목 3] 사회문제와 사회적 가치(15분)</p> <p>※ 위 과목 수강 100% 내역을 캡처하여 사업계획서 내 첨부</p>		

○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 항목

구분	내용	배점
사회문제정의 및 핵심고객	■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구체성 ■ 핵심고객 정의에 대한 구체성, 고객 확보 계획 등	20
시장규모 및 경쟁자 분석	■ 시장규모의 타당성 ■ 경쟁자 대비 차별성, 경쟁우위 보유 여부 등	20
창업아이템(해결방안)	■ 해결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■ 해결방안의 차별성 등	15
비즈니스모델	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가능성 ■ 수익모델의 구체성 및 적정성 등	15
핵심역량	■ 비즈니스모델 실현을 위한 인적,물적자원 보유 여부 등	10
마일스톤	■ 협약기간 내 사업진행 및 성공을 위한 계획 적정성 등	10
사업비 사용계획	■ 회계처리기준에 입각한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등	10
합 계		100

□ **전체 운영일정** * 세부 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

- 요건검토 : 2024. 4. 12.(금)
- 서면심사(결과발표 포함) : 2024. 4. 15.(월) ~ 19.(금)
- 심층인터뷰 : 2024. 4. 22.(월) ~ 23.(화)
- 대면심사 : 2024. 4. 25.(목) ~ 26.(금)
- 최종선정 : 2024. 5월 초(예정)

7

사업설명회

□ **일시 및 장소** : **2024. 4. 2.(화) 14시 ~ 16시, 경기도 옛청사 신관 4층**

* 주소 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신관 4층 대회의실

시간		소요 (분)	내 용	비고
부터	까지			
14:00	14:05	5	원장님 인사말	온·오프라인 동시진행
14:05	14:20	15	설명회 운영 취지 및 사업 소개	
14:20	14:40	20	사경원 사업참여 선배기업 경험담	
14:40	15:00	20	모집 일정 및 선정 주요내용 안내	
15:00	15:20	20	질의응답 및 향후 일정 안내	
15:20	16:00	40	(부스별) 운영기관-(예비)창업기업 상담	오프라인만 진행

□ **방 식** : 온·오프라인 동시 사업설명회

□ **신청방법** : 사업설명회 사전신청 링크에 접속하여 신청

* 사전신청 링크 : <https://forms.gle/rUcsYca9RW6KHmLA9>

구분		최종평가 지표			
초기트랙	예비창업자	완료	최우수	① 법인설립 and 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 ③ 매출 또는 고용창출 and ④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준비(신청요건 적합) 완료	
			우수	① 법인설립 and 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 ③ 매출 또는 고용창출	
			양호	① 법인설립 and ② 시제품 구현 완료	
		실패	① 법인 미설립 or ② 휴·폐업으로 인한 사업 유지 불가 or ③ 시제품 구현 불가 or ④ 필수 교육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교육 미수료, 사업비 유용 등 제재사유 발생 시		
			성실실패		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, 대표자의 사망·천재지변·외부환경 변화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 완료에 실패한 경우
	사회적경제기업	완료	최우수	① 법인유지 and ② 제품 구현(고도화) 완료 and ③ 지원사업비 20% 이상의 매출 또는 신규 고용창출 and ④ 지원사업비 이상의 투자유치	
			우수	① 법인유지 and ② 제품 구현(고도화) 완료 and ③ 매출 또는 고용유지	
			양호	① 법인유지 and ② 제품 구현(고도화) 완료	
		실패	① 휴·폐업으로 인한 사업 유지 불가 or ② 시제품 구현 불가 or ③ 필수 교육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교육 미수료, 사업비 유용 등 제재사유 발생 시		
			성실실패		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, 대표자의 사망·천재지변·외부환경 변화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 완료에 실패한 경우
사회적경제기업 진입희망 조직 (非사회적경제 조직)	이창업 중요표	완료	최우수	① 신규 이중업종 법인설립 and 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 ③ 매출 또는 고용창출 and ④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완료	
			우수	① 신규 이중업종 법인설립 and 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 ③ 매출 또는 고용창출 and ④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준비(신청요건 적합) 완료	
			양호	① 신규 이중업종 법인설립 and 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 ③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준비(신청요건 적합) 완료	
	실패	① 신규 이중업종 법인 미설립 or ② 휴·폐업으로 인한 사업 유지 불가 or ③ 시제품 구현 불가 or ④ 필수 교육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교육 미수료, 사업비 유용 등 제재사유 발생 시			
		성실실패		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, 대표자의 사망·천재지변·외부환경 변화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 완료에 실패한 경우	

구분		최종평가 지표			
초기트랙	사회적경제기업 진입희망 조직 (非사회적경제 조직)	중요지	완료	최우수	① (개인사업자) 신규 법인설립(개인사업자 폐업필요) (법인사업자) 법인유지 and
					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
					③ 매출 또는 고용창출 and
					④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완료
				우수	① (개인사업자) 신규 법인설립(개인사업자 폐업필요) (법인사업자) 법인유지 and
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					
③ 매출 또는 고용창출 and					
④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준비(신청요건 적합) 완료					
양호	① (개인사업자) 신규 법인설립(개인사업자 폐업필요) (법인사업자) 법인유지 and				
	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				
	③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준비(신청요건 적합) 완료				
	④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준비(신청요건 적합) 완료				
실패	① (개인사업자) 신규 법인 미설립(개인사업자 미폐업)				
	② 휴·폐업으로 인한 사업 유지 불가				
	③ 시제품 구현 불가				
	④ 필수 교육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교육 미수료, 사업비 유용 등 제재사유 발생 시				
성실실패	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, 대표자의 사망·천재지변, 외부환경 변화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 완료에 실패한 경우				
재도전트랙			완료	최우수	① 법인유지 and
					② 제품 고도화 완료 and
					③ 지원사업비 20% 이상의 매출 또는 신규 고용창출 and
					④ 지원사업비 이상의 투자유치
				우수	① 법인유지 and
					② 제품 고도화 완료 and
					③ 매출 또는 고용유지
					④ 지원사업비 이상의 투자유치
				양호	① 법인유지 and
					② 제품 고도화 완료
					③ 매출 또는 고용유지
					④ 지원사업비 이상의 투자유치
실패	① 휴·폐업으로 인한 사업 유지 불가 or				
	② 시제품 구현 불가 or				
	③ 필수 교육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교육 미수료, 사업비 유용 등 제재사유 발생 시				
성실실패	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, 대표자의 사망·천재지변, 외부환경 변화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 완료에 실패한 경우				

* 최종평가지표는 선발 후 사전컨설팅을 통해 변경가능성 있음

※ 유의사항 ※

- 법인설립(유지) 기준은 경기도 내 법인설립(유지)임
- 모든 평가지표 내 성과는 협약기간 내 발생한 건만 인정함
- 실패(또는 성실실패) 시 사업비 전액환수,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

1 신청자격 유의사항

- 사업자 2개 이상 보유 시,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나,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

※ (참고) 가능 기준

-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·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하는 경우 (단, 창업기업이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 한함)
- 비영리단체(법인 포함)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
- 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업 영위

-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 재창업 여부 확인을 위해 총사업자등록 내역,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※ (참고) 이종·동종업종 판단 기준

- 한국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(5자리)를 기준으로 함(소분류 일치 시 : 동종업종으로 판단)

*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: 통계청 통계분류포털(kssc.kostat.go.kr)-경제부문-표준분류-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-자료실-최신개정-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고

2 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사전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-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, 인증(예비창업자: 휴대폰 본인인증, 사업자: 사업자번호 인증)이 가능한 본인(또는 신청기업)이 신청하여야 함

3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

- 고위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협약 해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사실확인 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,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,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
-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모든

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

4 심사 중 유의사항

- 전 심사과정에서 신청한 (예비)창업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함

5 선정 후 유의사항

- 최종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협약기간 중 확인된 경우, 협약 해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사업부진, 사회적물의 발생, 사업비 횡령 등 부정행위 사유발생 시,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, 협약 해지,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

6 선정자 의무 및 역할

- 선정자는 「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세부 관리기준」, 「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회계 관리기준」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계획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함
- 선정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(3년간 사후성과 등), 평가 등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밀착멘토링·특화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
-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등 정당한 사유(경영부진(동분기 매출 60% 이상 감소, 사업자 양도, 인수합병 등)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3년 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

※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※ 이외 내용은 추후 배포될 「2024년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세부관리기준」 및 「회계처리기준」을 적용함

□ (총괄기관)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성장도약팀

○ (전화번호) 031-258-3285, 3283, 3288, 3289

○ (E-mail) inh@gsic.or.kr

※ 가급적 문의는 메일 문의 요망